



제 43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조합의 자기자본 범위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추가〉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9503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성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조합의 자기자본 범위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추가	2
IV . 참고자료	1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선교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6. 25.
3. 회 부 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조합의 자기자본 범위에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제외되어 있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해양수산부 고시인 「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준」에는 조합의 자기자본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포함되어 있음.

수협법과 실무 및 회계기준의 불일치로 조합 자기자본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자기자본은 수협법상 자금 차입 및 우선출자 한도 등 다양한 규제 한도의 산정 기준이 되는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자본에서 제외됨에 따라 자기자본이 과소평가되어 자금차입 한도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겪을 수 있음.

이에 조합의 자기자본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추가하여 법과 회계기준간 자기자본 범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자금 차입 및 우선출자 한도 등에 있어 조합의 실제 재무상태 반영 및 자본 확충 여력을 제고하여 조합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7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조합의 자기자본 범위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추가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지구별수협의 자기자본 구성항목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7호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8조(자기자본) 지구별수협의 자기자본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다.	제68조(자기자본)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설></u>	<u>7. 기타포괄손익누계액</u>

나. 검토의견

□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포괄손익(자본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손익) 중에서 당기순손익에 포함되지 않는 평가손익의 누계액임.

기타포괄손익의 대표적인 경우는 보유자산의 가치나 환율 등이 변하여 회계상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이 발생하였지만 아직 해당 자산을 처분하거나 관련 거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로,

이러한 평가손익은 관련 자산의 처분이나 거래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까지 최종 손익이 확정되지 않았고 당기의 실현된 경영성과와도 구별되므로, 회계기준은 이를 당기순손익에 포함하지 않고 기타포괄손익으로 별도 인식하도록 하고 있음.

일반기업회계기준¹⁾에서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예를 들어, 조합이 100억원에 취득한 매도가능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산일 현재 해당 증권의 공정가치가 120억원으로 상승한 경우, 조합이 이를 실제로 매각하지 않았으므로 20억원의 이익이 실현된 것은 아니지만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액인 20억원을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으로 인식하여 기타포괄손익

1) 「일반기업회계기준」

2.39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및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누계액에 반영하게 됨.

□ 현행법 제68조²⁾는 지구별수협의 자기자본에 관한 규정이나, 준용 규정³⁾에 따라 업종별수협(제108조), 수산물가공수협(제113조), 조합공동사업법인(제113조의10제1항)에도 적용되므로, 조합⁴⁾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모두 적용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음.

현행법 제68조는 조합의 자기자본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8조(자기자본) 지구별수협의 자기자본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월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다.

1. 납입출자금 2. 회전출자금 3.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4. 가입금 5. 각종 적립금 6. 미처분 이익잉여금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8조(준용규정) 업종별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및 **제62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후단 생략>

제113조(준용규정) 수산물가공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부터 제103조(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후단 생략>

제113조의10(준용규정)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2조의3,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31조부터 제42조까지, 제45조, 제49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5조, **제68조**, 제70조제1항·제3항·제4항, 제71조제1항·제2항, 제72조제1호,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 제84조제1호·제2호·제3호·제5호, 제85조부터 제96조까지 및 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 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5) 「일반기업회계기준」

2.18 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인 자산, 부채, 자본은 각각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하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 (2)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 (3)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으로 구분한다.

자본의 구성항목으로 분류하고 있고, 해양수산부 고시인 「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준」⁶⁾도 조합의 자기자본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중앙회의 자기자본에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포함⁷⁾되어 있어, 조합의 법률상 자기자본 범위가 기업회계기준, 고시상 재무기준 및 법률상 중앙회에 적용되는 기준과 상이한 구조임.

- 제68조에 따른 자기자본은 단순히 조합의 회계상 자본 규모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①조합의 우선출자, ②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③법정적립금, ④경영지도 및 ⑤사업자금 차입과 관련된 각종 법정 기준을 산정하는 데 활용되고 있음.

<자기자본 관련 기준>

구분	자기자본 관련 기준
우선출자 ⁸⁾	총액은 원칙적으로 자기자본의 2분의 1 이하
법인 출자 ⁹⁾	총출자액은 자기자본 이내 동일 법인 출자는 원칙적으로 자기자본의 20% 이하
법정적립금 ¹⁰⁾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매년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 적립
경영지도 ¹¹⁾	부실대출액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 경영지도 요건 판단
사업자금 차입 ¹²⁾	신용사업자금은 승인 시 자기자본의 5배 그 밖의 사업자금은 자기자본의 7배 이내

6) 「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준」

제2조(자기자본) ① 조합의 자기자본은 우선출자금(비누적적인 것에 한정한다),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가입금, 제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이월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에서 **기타포괄손익누계액**항목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② 중앙회의 자기자본은 우선출자금(비누적적인 것에 한정한다),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가입금, 제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합계액(이월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으로 한다.

7)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4조(자기자본) ① 삭제 <2022. 12. 27.>

② 중앙회의 자기자본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이월결손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한다)으로 한다.

1.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2. 납입출자금
3. 회전출자금
4. 가입금
5. 각종 적립금
6. 미처분 이익잉여금
7. 자본조정
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업종별수협·수산물가공수협에는 준용규정에 따라 위의 기준이 모두 적용되며, 조합공동사업법인에는 위의 기준 중 우선출자 및 법정적립금에 관한 기준이 적용됨.

□ 개정안은 법률과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

8)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2조의2(우선출자) ① 지구별수협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14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지구별수협”으로, “회원”은 “조합원”으로 보고, 제147조제3항 본문 중 “제120조제2항”은 “제22조”로, “자기자본”은 “제68조에 따른 자기자본”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별수협은 중앙회 및 다른 조합을 대상으로 우선출자를 하게 할 수 없다.

제147조(우선출자)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제120조제2항에 따른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같아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자기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와 공공단체의 우선출자금에 대하여는 총 출자계좌 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9)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사업) ① 지구별수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⑧ 지구별수협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68조에 따른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1. 중앙회에 출자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지구별수협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시설물을 출자하는 경우

10) 「수산업협동조합법」

제70조(법정적립금 등) ① 지구별수협은 매 회계연도의 손실 보전을 하고 남은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매 사업연도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2조(경영지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어 조합원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조합등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한다.

1. 조합에 대한 감사 결과 조합의 부실대출을 합친 금액이 **제68조에 따른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단기간 내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회수하기가 곤란하여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2)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8조(조합의 자금차입 한도 및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①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이 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용사업을 위하여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합계액의 한도(조합이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에 예치한 예탁금의 범위에서 실행되는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의 대출은 제외한다)는 **법 제68조(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범위**로 한다. 다만,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이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이하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차입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5배 이내**로 한다.

② 조합이 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용사업 외의 사업을 위하여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합계액의 한도는 **자기자본의 7배 이내**로 한다.

준」간 조합의 자기자본 범위가 서로 다른 문제를 해소하고 자기자본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법률상 자기자본에 반영함으로써 조합의 회계상 재무상태가 자금 차입 및 우선출자 등의 법정 한도에 반영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법상 자기자본에 포함함에 따라 조합의 사업자금 차입한도, 법인 출자 한도 등이 확대되는 것이 조합의 재무건전성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5년 단위수협의 자기자본 현황¹³⁾을 살펴보면, 개정안대로 자기자본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포함될 경우 91개 조합의 자본은 1조 1,574억원에서 1조 5,561억원으로 3,987억원 증가하게 되며,

신용사업자금의 차입한도는 1조 9,935억원, 기타사업자금의 차입한도는 2조 7,909억원 증가하게 됨.

<개정안에 따른 자기자본·차입한도 증감>

(단위: 억원)

구분		현행	개정안	증감
자기자본		11,574	15,561	3,987
차입한도	신용사업자금	57,870	77,805	19,935
	기타사업자금	81,018	108,927	27,909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

13) [참고 1] 참조

개별 조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91개 단위수협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음수인 조합은 진해수협뿐이며 51개 조합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1억원 이상이므로¹⁴⁾, 개정안대로 개정된다면 절반 이상의 단위수협에서 법상 자기자본 및 이에 연동되는 사업자금 차입한도와 법인 출자 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이처럼 상당수 조합의 차입 및 법인 출자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으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자산 등 평가액 변동에 따라 증감할 수 있는 항목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의해 확대된 한도에 따라 차입이나 법인 출자가 이루어진 후 자산평가액이 하락하는 경우, 법상 자기자본과 이에 연동된 한도는 축소되는 반면 이미 이루어진 차입 및 출자 규모는 즉시 조정되기 어려워 조합의 한도 관리에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아울러, 최근 단위수협은 경제사업 적자가 지속되고 상호금융 부문의 수익성과 자산건전성도 저하된 상황이므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법상 자기자본에 포함함으로써 조합의 자금조달 및 투자여력이 확대되는 효과와 함께 재무건전성 관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균형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14) 나머지 조합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없거나 1억원 미만의 소액인 것으로 나타남.

<회원조합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경제(일반)	△61,131	△83,812	△141,218	△128,773	△93,202
상호금융	222,627	253,481	84,056	△141,650	27,990
계	161,495	169,669	△57,162	△270,423	△65,212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

<수협 상호금융권 연체율*>

(단위: %)

연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5월
연체율	2.0	4.1	6.7	5.7	7.1

* 전체 대출규모 중 연체대출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

**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

둘째, 타 협동조합 법률과의 규제 체계상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농업협동조합법」 15)과 「산림조합법」 16)은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과 마찬가지로 개별 조합의 법률상 자기자본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동일한 성격의 회계상 평가손익이 수협에서만 사업자금 차입 및 법인 출자 등의 한도 산정에 반영되는 차이가 발생하게 됨.

15) 「농업협동조합법」

제67조(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① 지역농협은 매 회계연도의 손실 보전과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충당하고도 남으면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은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입금, 각종 적립금 및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이월결손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한다)으로 한다.

16) 「산림조합법」

제56조의2(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손실보전과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에 달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은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가입금, 각종 적립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이월결손금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으로 한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사업구조 및 재무적 특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수협에 대해서만 법률상 자기자본의 범위를 달리 정할 필요성과 그 근거가 충분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해양수산부는 동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자기자본에 포함될 경우, 자기자본 증가에 따라 사업자금 운용 범위가 확대되며 우선출자액 증대로 자기자본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단위수협은 지속적인 경제사업 적자 누적과 함께 최근 신용사업 부문까지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상황과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황으로 조합의 차입자금 한도 확대를 통한 사업규모 확장을 유도하는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함.

- 수협중앙회는 개정안을 통해 수협법과 수협재무기준 간 자기자본 범위 불일치가 해소되어 자기자본이 명확해지며, 자금 차입한도 및 우선 출자가 확대되어 조합의 자본 확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¹⁷⁾

문 의 처

02)6788-5427

-
- 17)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참고 1

단위수협의 자기자본 현황(2025년 기준)

(단위: 억원)

조합명	자본 총계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자본계 (기포손 제외)	출자금	가입금	자본 잉여금	이익 잉여금
91개	15,561	3,987	11,574	7,385	104	408	3,677
냉 동 냉 장	923	47	876	152	3	0	722
여 수	692	-	692	238	0	-	453
고 흥 군	680	-	680	347	2	-	331
제 주 어 류 양 식	543	53	491	126	0	-	364
경 통 기	513	76	437	147	1	4	285
통 영	496	-	496	266	0	16	214
완 도 금 일	494	-	494	122	12	0	360
경 인 북 부	454	147	308	99	5	-	204
진 도 군	423	0	423	102	0	-	320
영 광 군	419	0	419	231	3	-	186
경 인 서 부	370	74	296	164	16	-	117
대 형 기 선 저 인 망	346	201	145	100	0	-	44
성 산 포	329	-	329	112	0	174	43
인 천	324	139	186	172	13	0	1
강 룡 시	307	-	307	125	0	-	182
민 물 장 어 양 식	306	-	306	125	0	-	181
신 안 군	301	-	301	92	1	2	206
포 항	290	-	290	176	0	11	103
목 포	274	-	274	175	3	-	96
서 남 구 기 선 저 인 망	273	132	140	22	0	-	118
진 해	261	△5	266	113	0	45	108
서 귀 포	246	119	127	81	1	-	45
멸 치 권 현 망	241	85	156	20	0	45	91
근 해 안 강 망	229	39	190	40	13	8	128
울 산	225	179	46	127	3	1	△84
한 림	213	-	213	64	0	-	149
통 조 림 가 공	213	-	213	52	0	-	161
강 구	209	97	112	78	0	1	33
서 산	209	19	190	130	0	0	59
서 천 서 부	207	-	207	63	2	-	141
완 도 소 안	200	-	200	127	0	1	73
해 남 군	194	60	134	75	1	-	58
보 령	182	140	43	238	0	-	△196
부 산 시	181	361	△180	86	1	2	△268
제 주 시	173	56	117	77	0	-	40
굴 수 하 식	163	-	163	65	0	2	97
부 안	159	54	104	187	1	0	△84
울 진 죽 변	154	-	154	151	3	4	△4
서 남 해 수 어 류 양 식	151	11	140	62	1	-	78
기 장	149	108	41	31	0	-	10
하 동 군	147	-	147	97	0	35	15
근 해 유 망	137	-	137	39	0	-	97
강 원 고 성 군	129	51	78	53	0	4	21
삼 천 포	128	28	100	84	0	-	15
남 해 군	125	39	86	80	0	-	6

고창군	118	25	93	81	0	0	12
울릉군	118	73	45	42	0	-	3
안면도	116	16	100	73	0	-	27
김제	116	-	116	68	1	-	48
패류살포양식	109	26	83	44	1	0	38
부경신항	106	60	46	77	0	0	△31
나로도	101	-	101	42	0	-	59
마산	101	0	101	61	0	1	40
양양군	101	33	67	51	0	-	17
사천	99	11	89	40	0	11	37
속초시	95	-	95	50	0	-	45
대형선망	93	200	△107	26	0	-	△133
대천서부	92	29	63	52	0	-	11
울진후포	91	12	78	68	0	-	10
경남고성군	88	-	88	42	0	-	46
당진	87	-	87	56	0	-	31
동해구기선저인망	82	-	82	26	0	-	56
군산시	81	343	△262	120	0	0	△383
서천군	81	-	81	52	0	2	26
경주시	79	32	47	41	0	17	△11
영덕북부	77	33	44	39	0	-	4
제1,2구잠수기	77	175	△99	36	0	-	△134
모슬포	65	30	35	29	0	-	5
삼척	60	3	57	40	0	-	17
장흥군	59	-	59	56	0	8	△5
동해시	59	-	59	38	0	5	17
삼척원덕	54	39	16	14	0	0	2
죽왕	54	15	39	24	0	0	15
제3,4구잠수기	54	-	54	40	0	0	13
명계수하식	54	42	12	28	0	0	△16
태안남부	48	-	48	35	0	1	12
강진군	39	-	39	21	0	0	18
전남서부어류양식	29	-	29	22	-	-	8
사량	27	-	27	20	0	-	7
육지	27	17	10	18	0	0	△8
영흥	25	-	25	22	0	0	3
창원서부	21	-	21	18	0	0	3
전남정치망	17	-	17	7	0	-	10
거문도	15	14	1	30	0	-	△29
대포	10	6	4	23	0	5	△24
추자도	△2	-	△2	20	1	1	△25
전남동부	△14	25	△39	23	2	0	△65
근해장어통발	△56	32	△88	18	0	-	△107
거제	△145	139	△283	199	7	1	△491
구룡포	△210	117	△326	116	0	1	△443
경남정치망	△218	132	△350	24	0	0	△374

주: 표 중 '-'는 해당 항목의 금액이 없는 경우이며, '0'은 1억원 미만의 금액이 억원 단위로 표시됨에 따라 0으로 표시된 것임